

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추천 설명자료

2020. 3. 12.(목), 대한체육회

- **자격요건** (※ 근거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 제1항 제22호)
 - **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**(국제경기연맹, 국제대학스포츠연맹,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 중 단체경기의 경우 15개국 이상, 개인경기인 경우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)에서 **3위 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**

- **대상주택** (※ 근거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 제1항, 제36조)
 - 국민주택,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

□ 자격을 갖춘 우수선수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요건
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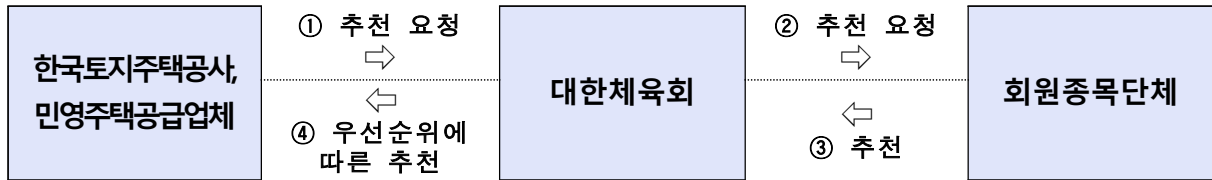
※ 요건 해설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기준)

- 주택건설지역: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의 행정구역
- 무주택세대구성원: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
- 무주택 기간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3조 제4항에서 정하는 날 기준

-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)
- 기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(별첨 참조)에 저촉되지 않는 우수선수

□ 신청방법

- 신청절차



- 우선순위 부여기준
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상 대회에 대해 “체육인복지사업 운영규정”의 국제대회별 평가점수표를 준용한 종합점수 산정방식에 따라 순위를 결정

구 분	점수			
	금메달	은메달	동메달	
올림픽대회	90	70	40	
세계선수권대회	4년 주기	45	12	7
	2~3년 주기	30	7	5
	1년 주기	20	5	2
세계대학생경기대회/아시아경기대회/ 세계군인체육대회	10	2	1	